



금융감독원

수신 김바* 등 3명

(경유)

사본수신

제목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 공시송달

2020.11.9.~12.4. 기간 중 에이원자산관리(주)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, 관련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(고지)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(방문수령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방문하지 않아 반송처리함)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시행문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
- 붙임 1.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서 1부.
- 붙임 2. 의견진술서(서식) 1부.
- 붙임 3. 제재심의위원회 의견진술자 진술예정서(서식) 1부.
- 붙임 4.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 신청 안내 1부. 끝.

금융감독원장



담당부서	보험영업검사실	검사2팀			
검사역	06/07	홍윤태	팀장(J)	06/07	최영덕
				실장	전결 06/07
					박진해

합의자

일상감사

시행 보험영업검사2팀-442 (2021.06.07.) 접수 ()

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/ <http://www.fss.or.kr>

전화번호 02-3145-7278 팩스번호 02-3145-7289 / hongyountae@fss.or.kr / 비공개(5)